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수신자 :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: 『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』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의료법」 제36조·제64조, 「약사법」 제47조·제95조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, 약국 개설자는 위해의약품을 저장·진열 및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,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3. 위와 관련,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'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'를 아래와 같이 제공 중 이오니 회원사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관업무포털(공지사항 2491번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제공대상 위해의약품: 식약처 회수명령 의약품, 유효(사용)기한 경과·임박 의약품

- 아래 -

○ 제공내용: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으로 위해의약품이 유통된 정보

항목	내용
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	식약처 회수명령 발생 시 해당 의약품 보유여부* 안내 * 회수명령일 기준, 최근 3개월 이내 입고된 의약품
회수의약품 입고 알림	회수대상 의약품 입고 시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, 공급일자, 제조번호 등 정보 안내
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	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입고 시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, 공급일자, 유효기한 등 정보 안내
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	유효기한이 임박한 의약품* 입고 시 해당 의약품 정보 및 처방·조제 등 유의 안내 * 사용기한이 '제조일로부터 36개월'인 의약품 기준, 잔여기한이 3개월 이내로 남은 의약품

○ 제공방법: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의 휴대전화로 위해의약품 입고 등
유통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

○ 신청방법: 요양기관업무포털(<https://biz.hira.or.kr>) 인증서 로그인 후, ① 또는 ②

- ① 팝업창 안내 이미지의 '신청하기' 버튼 클릭
- ② '진료비청구 >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> SMS신청' 메뉴 접속

불임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안내문. 끝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약사회장

결재

담당 조란

팀장 이은정

부장 장종문

센터장

전결 10/24
이소영

협조

시행 의약품정보개발부-7101 (2023.10.24.) 접수

()

우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(반곡동) / www.hira.or.kr

전화 033-739-2264 전송 033-811-7440 / ran0317kr@hira.or.kr

/ 공개

심평원의 청렴지수 고객의 행복지수 "행복의 전화 1644-2000"